

국회에서 의결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8년 12월 18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언

국 무 위 원

박 상 기
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5980호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항 중 “판사·검사”를 “판사, 검사,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